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

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Ⅰ 공급개요 및 일정

■ 위　　치 :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공공택지지구 C3BL

■ 공급규모 : 총 711세대(지하 1층~지상 18층 12개동)

■ 일정 계획

구 분	일 자	참고사항
• 입주자모집공고	2018.04.26(목)	북구청 홈페이지 (www.buk.daegu.kr)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홈페이지 (http://yeongyeong-yemizi.com/)
• 견본주택 개관	2018.04.27(금)	주소 : 대구 동구 동부로 103-4
• **접수일자**	2018.05.02.(수) [09 : 00시~14 : 00시]	**견본주택 방문접수** **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**
• 당첨자 발표	2018.05.02(수) [17 : 00시 이후]	당사 견본주택 게재

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Ⅱ 특별공급자격

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[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)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(국가보훈처, 보건복지부, 지자체 등)]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함
-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(장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민 제외)

■ **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**
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1인

※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

(1)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,

(2) (세대주 및 세대원 중)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,

(1) + (2)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

※ 세대원 기준
세대주(신청자)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[세대주(신청자)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(신청자)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]

▌'청약통장' 가입 요건

※ 통장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지역별 청약예치금 이상인 자

지역 / 공급받을 수 있는주택의 전용면적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 (대구광역시)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경상북도)	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해당타입
85제곱미터 이하	300	250	200	78㎡,84㎡
102제곱미터 이하	600	400	300	78㎡,84㎡,101㎡
135제곱미터 이하	1,000	700	400	
모든 면적	1,500	1,000	500	

※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.

▌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, 신혼부부 우선공급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
  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▌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·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
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, 세대구성원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확인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 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]

Ⅱ 당첨자 선정방법

▌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 불가]

▌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 에 신청하여야 함.

▌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기관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.

▌당첨자에 대한 동/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(미신청,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/호 변경불가)

▌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/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.

Ⅲ 신청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재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**[2018.04.26(목)]이후 발급분에 한함**
-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-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▌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(각 1통)

해당서류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
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	• 신청일에 신청장소(견본주택)에 비치
주민등록표등본,초본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
인감증명서	• 용도:주택공급신청용(서명으로 대체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가족관계증명서	•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 및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)	•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
인감도장	•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.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
청약통장순위확인서	•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[청약부금, 청약예금,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능] • 철거민,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, 장애인 제외(그 외 특별 공급 대상자는 제출)

▌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(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/ 각 1통)

구비서류	비 고
위임장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[양식은 (견본주택)에 비치]
신청자 인감증명서	• 주택신청 위임용
대리인 인장	
대리신청자	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또는 여권

Ⅳ 유의사항

▌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**신청일[2018.05.02(수)예정]에 견본주택 (대구 동구 동부로 103-4) 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**

▌타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이전기관 종사자 등)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당 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.

▌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

▌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신청자 및 그 세대원(부부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

▌공급금액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8.04.26.(목) **입주자모집공고문을**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,

▌**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▌**입주자모집공고일 (2018.04.26.목) 현재 '무주택세대주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는**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담당자 :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분양사무소 김형준 팀장

(이메일 : kihj79@naver.com)

☞ 문의 : 대구 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분양사무소 1899-3935 / FAX :053)327-2206